

검 토 보 고

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

- 동 조례안은 1998년 11월 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음.

□ 제안이유

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혁파하고자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기존규제의 심사,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, 규제의 신설·강화 등에 대한 심사, 규제의 등록·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정함 (안제2조)
- 나.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위원장 2인을 포함 12인 이내로하여 시장이 위촉토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. (안제3조)
- 다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토록 함. (안제4조)
- 라.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. (안제5조)

마.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
에 규제신고센터를 둠 (안제7조)

□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
위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혁파하고자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
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
로서
- 근거법규인 행정규제기본법과 중앙의 준칙안에 따라 충실하게
작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위원장이 2
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회의소집 및 주재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
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